

## 제7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0. 12. 28.(화) 11:00

## 2. 장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#### 4. 불참위원 : 없음

## 5. 회의내용

## 가. 성원보고

#### 나. 국민의례

다. 개회선언

#### 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
#### 마. 전차회의록 확인

## 바. 의결사항

### 1) 2010~2011년도 접속료 산정 등에 따른 「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」(고시) 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0-78-356)

- 노영규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2010 ~ 2011년 유·무선전화망 및 인터넷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방식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「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」(고시)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.
- 주요 내용

- ① (유선전화망 접속료) 동축케이블(가입자선로) 유지 유인을 억제하고, 차세대 통신망 (FTTX) 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차세대 통신망 투자를 유도

(단위 : 원/분)

구 분	2009년	2010년	2011년
유선전화	19.31원	19.15원	18.57원

- ② (이동전화망 접속료) 유효경쟁정책 전환 방침과 단일접속료를 지향하는 글로벌 트랜드를 반영하여 통신사업자간 접속료 격차 축소
    - 차세대 이동통신 전국 서비스 개시가 예상되는 2013년 단일접속료 적용

(단위 : 원/분)

구 분	SKT	KT	LG U <sup>+</sup>
2009년	32.93	37.96 (15%)	38.53 (17%)
2010년	31.41	33.35 (6.2%)	33.64 (7.1%)
2011년	30.50	31.75 (4.1%)	31.93 (4.7%)

※ ( )는 SKT와의 접속료 격차 비율

- ③ (인터넷전화망 접속료) 인터넷 전화 사업자가 받는 접속료를 인상하여 유선전화 (PSTN)와의 접속료 격차를 축소하고 인터넷 전화 이용 촉진

(단위 : 원/분)

구 분	2009년	2010년	2011년
인터넷전화	7.66원	10.51원	10.48원

- ④ (기타사항) 유효경쟁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유·무선 지원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되, 중소사업자 지원정책은 유지

## 2) 「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0-78-357)

○ 정한근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방송법시행령 개정('10. 10. 1)에 따라 편성비율 산정기간 변경 및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비율 산정시 가산제 도입 등을 위해 마련된 「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.

### ○ 주요 내용

① 방송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외주제작 및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변경

②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비율 산정시 어린이들이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편성한 경우 편성시간을 100분의 150으로 인정

※ 평일 : 7시~9시, 17시~20시, 주말 및 공휴일 : 7시30분~11시, 14시~20시

③ 동·하계 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의 경우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시 전체 방송시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편성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④ 재난방송의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자구 수정

※ '방송법 제75조'에서 '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'로 변경

⑤ [별표1]의 '제5조에 의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'을 '제6조에 의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'으로 정정

## 3) 「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」 등 고시 제·개정 등에 관한 건 - (2010-78-358)

○ 황철중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이 신설('10. 10. 1)됨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을 정하고, 현행 고시 중 과도한 보호조치 기준을 현실화하며 중복·불필요한 규정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함.

### ○ 주요 내용

#### ① 「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」 고시 제정안

##### ① 기본과징금의 산정

- 관련 매출액과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(0.5% ~ 0.9%)을 곱하여 기본 과징금을 산정

※ 매출과 관련없는 위반 행위 또는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액으로 산정

-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△일반 위반행위, △중대한 위반행위, △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가지로 구분

◆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방식

- 1단계(원인 고려) : 일반 위반행위 또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
- 2단계(결과 고려) : 피해가 경미하면 '매우 중대한 위반행위'를 '일반 위반행위' 또는 '중대한 위반행위'로 감경 ⇒ 이득획득 여부, 피해규모, 외부노출 여부 고려

② 과징금의 의무적 조정

- 위반기간 및 위반횟수에 따라 50% 범위에서 기본과징금을 가중·감경함

◆ 의무적 조정 방식

- 1단계(의무적 가중) : 위반기간에 따라 단기·중기·장기로 구분하여 차등 가중

위반 기간	1년 이내(단기)	1~2년(중기)	2년 초과(장기)
가중 기준	가중 없음	25% 가산	50% 가산

- 2단계(의무적 감경) : 위반횟수에 따라 최초 위반 행위자는 50% 감경

③ 과징금의 임의적 조정

- 50% 범위에서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가중·감경할 수 있는 재량 부여

가중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를 방해하거나, 이용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한 경우(30% 이내)</li> <li>· 다수 사업자가 관련된 위반 행위를 주도·선도한 경우(20% 이내)</li> </ul>
감경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방통위가 인정하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(50% 이내)</li> <li>· 개인정보 위반에 관한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(30% 이내)</li> </ul>

④ 시정조치 명령

-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명할 수 되, 위반 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징금을 시정조치 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음

② 「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」 고시 개정안

① 내부관리계획 정의 신설

- 사업자가 수립·시행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대하여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의 신설 및 관련 조문 수정

② 개인정보 출력·복사물의 세부적인 보호조치 규정 삭제

- 개인정보의 출력·복사물 보호조치 의무는 유지하되, 구체적인 보호조치 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

③ 「개인정보보호지침」 고시 폐지안

- 법률·시행령 개정, 「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」 고시 제정으로 개인정보보호지침의 모든 내용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반영됨에 따라 불필요한 현행 고시 폐지

## 사. 보고사항

### 1)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

-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전파관리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조사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을 황철중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음.
  - 주요 내용
    -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·검사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 위임(안 제70조)
    -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현재 위임되어 있는 사항(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처리를 위한 조사)은 현행대로 유지
    - 행정처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,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
- ※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(과징금, 과태료, 시정명령)은 현행대로 위원회가 수행

## 아. 기타

### 1)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최일시는 추후 결정하기로 함.

## 6. 폐회 (11:45)